

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1. 10. 5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, 과태료 금액을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령	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		
		1회	2회	3회 이상
가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39조 제1항	50	100	180
나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9조 제1항	70	120	200